

고병국 의원(예산결산특별위원회, 더불어민주당)

출연기관 예산편성 관련

4.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잉여금으로 편성한 유보금으로 근로자 보수, 사무실 확장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바,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답변 바람

2015년~2016년 결산잉여금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총 수 입	총 지 출	결산잉여금
2015년	1,987,571	1,674,385	313,186
2016년	2,666,727	2,370,520	296,207

※ 근로자 보수, 사무실 확장 및 리모델링 비용은 2015년~2016년 결산잉여금으로 지출

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: 행정자치부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(2016~2017)

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부합 여부 : 부합

○ 2015년도 결산잉여금(313,186천원)

- 2016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(행정자치부, p.7)에 따라 이사회 승인(제5차 정기이사회, '16.2.22)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50,197천원을 편입하였고, 2016년도 이월수입으로 262,989천원을 계상하였으며
- (재)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회계규정 제57조(잉여금의 처리)에 따라, 인건비(108,488천원), 경상비(60,500천원), 사업비(94,000천원)로 편성하였음

○ 2016년도 결산잉여금(296,207천원)

- 2017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(행정자치부, p.8) 따라 2017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(평생교육과)와 협의후, 이사회 승인(제8차 정기이사회, '17.2.27)을 거쳐 기본재산에는 편입하지 않고, 차입금은 없는 관계로 차입금변제 우선 활용은 해당사항이 없었음

- (재)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회계규정 제57조(잉여금의 처리)에 따라, 2017년도에 이월하여 시설비(15,000천원), 사업비(118,000천원), 예비비(163,207천원)로 편성하였음
- ※ 예비비의 경우, 이사회('17.9.19) 승인을 거쳐 일부를 사업비(59,760천원)와 인건비(21,600천원)로 편성

따로붙임 : 잉여금 관련 지침 및 규정 1부. 끝.

작성 자	기관명 (부서명)	직위	성명
	서울특별시 (평생교육과)	담당사무관	천주환
	☎2133-3966	담당자	박용성
	(재)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(경영지원팀)	담당팀장	박지환
	☎719-6092	담당자	원지훈
	작성일 : 2018.12.12.		

- **2016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(행정자치부, p7)**
 -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(자본금)에 편입하거나 다음연도 이월수입으로 계상

- **2017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(행정자치부, p8)**
 -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(자본금)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활용

- **(재)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회계규정 제57조(잉여금의 처리)**
 -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한다.